

**한화생명
트리플라이프연금보험 무배당**

2015. 05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 한화생명 트리플라이프연금보험 무배당 (1종:맞춤설계형, 2종:LTC형)[적립형, 거치형]

2. 보험기간

구 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맞춤설계형	종신연금형 [개인형,신부부형] (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 보증지급)	보험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LTC형	종신연금형 (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 보증지급)		

※ 맞춤설계형의 경우 가입시 약관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가’목 및 ‘나’목의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보증지급나이는 (연금개시나이+5)세 이상으로 한다.

3. 보험료 납입기간

- 적립형 : 3년납,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
- 거치형 : 일시납

4. 피보험자 가입나이

- 가입최저나이 : 만15세
- 가입최고나이 : 연금개시나이, 납입기간별로 아래와 같음.

납입기간	가입최고나이	
	적립형	거치형
3년납	(연금개시나이 - 16)세	(연금개시나이 - 10)세
5년납	(연금개시나이 - 12)세	
7년납	(연금개시나이 - 12)세	
10년납	(연금개시나이 - 15)세	
15년납	(연금개시나이 - 18)세	
20년납	(연금개시나이 - 23)세	
전기납	(연금개시나이 - 14)세	

- ※ 다만, 피보험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종업원 복리후생의 일부로서 연금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급여이체 등의 방법으로 일괄계약을 체결한 경우 10년납 가입 최고나이는 (연금개시나이 - 14)세로 함

5. 연금개시나이

- 45세 ~ 80세

- ※ 맞춤형계형 신부부형의 주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 48세~80세

6. 보험료 납입주기

가. 기본보험료

- 적립형 : 월납
- 거치형 : 일시납

나.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7. 보험료의 정의 및 납입한도

가. 기본보험료

(1) 적립형 :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

- 구좌당 월납 보험료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다만, 3,5년납의 경우 구좌당 월납 보험료 13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 다만, 피보험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종업원 복리후생의 일부로서 연금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급여이체 등의 방법으로 일괄계약을 체결한 경우 10년납 이상 계약의 월납보험료의 한도는 구좌당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함

(2) 거치형 : 일시납보험료를 말하며 납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추가납입보험료’라 함은 기본보험료 이외에 연금개시전에는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나이-3)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단, 2종[LTC형]의 경우 (연금개시나이-5)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에는 제11조(Stop&Go 옵션에 관한 사항)에 의한 ‘Stop&Go기간’ 중 (보증지급나이-3)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을 따른다.

(가) 최저한도

- 기본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할 경우 : 없음
- 기본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 매회 5만원 이상 금액

(나) 최고한도

- 적립형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text{기본보험료} \times \text{가입 후 경과월수} + \text{선납보험료}) \times 200\% - \text{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후 경과월수는 가입할 때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한다.

- 거치형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한다.

다만, 제12조(기타) ‘자’목에 따른 중도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 내에서 최고한도와는 별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8. 조건부인수를 위한 부가특약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 표준하체인수특약

9. 보험료 납입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유예제도의 정의

계약자가 납입기간 중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의 납입을 유예(이하 ‘납입유예’라 함)할 수 있는 제도(단,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미만인 계약은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나. 신청 조건 및 한도 등

(1) 신청 조건

다음 각 목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보험계약일부터 약정 납입기간의 절반(약정 납입월수 기준)이상 경과한 계약. 단, 10년납 이상은 5년이상 경과한 계약

(나) 신청시점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특약의 해지환급금 제외)이 해당월별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이하 ‘약정보험료’라 한다)보다 큰 경우

(2) 1회 신청 가능기간

납입유예 신청월수에 해당하는 약정보험료의 총액이 납입유예 신청시점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특약의 해지환급금 제외) 이하이어야 하며, 12개월을 최고 한도로 한다.

◎ 1회 신청당 납입유예가능기간(월수)

$$= \text{Min} \left(\frac{\text{납입유예 신청시점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특약의 해지환급금 제외)}}{\text{약정보험료}}, 12 \text{개월} \right)$$

(3) 최대가능기간

신청횟수와 관계없이 5년납은 최대 2년(24개월), 5년납 초과는 최대 3년(36개월) 이내로 한다.

다. 납입유예의 종료

- (1)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의 종료 및 보험료 납입을 안내(미납시 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후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2)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유예종료를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된다.

라.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

- (1)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다. 다만, 추가납입 보험료는 납입할 수 있다.
- (2)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 경우 납입기간의 종료일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된다.
-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기납계약의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되지 않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 (4) 납입유예기간 중 해당월 계약해당일에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계약자적립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특약의 책임준비금은 제외)에서 공제한다.
- (5) 단기납 계약에서 납입면제특약에 의해 납입면제가 된 경우, 납입면제 사유 발생 전 납입유예를 한 계약은 납입면제 사유 발생전 기납입유예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10.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하지 않음

11. Stop&Go옵션에 관한 사항

가. 용어의 정의

- (1) Stop&Go옵션 개시일 : Stop&Go옵션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계약해당일
- (2) Stop&Go기간 : Stop&Go옵션 개시일부터 Stop&Go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은퇴설계연금액 및 실버케어 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Stop&Go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기간
- (3) Stop&Go기간 종료일 : Stop&Go기간 종료 신청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단, Stop&Go기간의 종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보증지급나이의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4) Stop&Go적립금 : Stop&Go기간동안 지급하지 않은 은퇴설계연금액, 실버케어연금액 및 Stop&Go기간 중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계약관리비용 차감)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계산한 금액

(5) Stop&Go연금 : Stop&Go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5년이상 최대 105세^㉞까지 연단위) 분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확정기간연금

(㉞) 피보험자(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의 나이 기준

나. Stop&Go옵션이라 함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계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은퇴설계연금액 및 실버케어연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적립한 Stop&Go적립금으로 Stop&Go기간 종료 신청시 Stop&Go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 Stop&Go옵션은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계약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보증지급나이-1)세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다.

라. Stop&Go옵션을 신청한 계약자는 Stop&Go옵션 개시일 전일까지 Stop&Go옵션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마. 계약자는 Stop&Go기간 중 (보증지급나이-3)세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제7조(보험료의 정의 및 납입한도) ‘나’항에 의해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바. Stop&Go옵션을 신청한 경우 계약자는 보증지급나이의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 Stop&Go기간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최종납입일로부터 최소 3년이 경과된 후에 Stop&Go기간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사. 계약자가 Stop&Go기간의 종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보증지급나이의 보험계약해당일 전일에 Stop&Go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

아. 계약자는 Stop&Go기간 종료 신청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Stop&Go연금의 연금지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Stop&Go기간 종료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 다만, Stop&Go연금의 연금지급기간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연금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자. Stop&Go기간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Stop&Go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계약해당일부터 Stop&Go연금을 지급한다.

차. ‘바’항에도 불구하고, Stop&Go연금의 지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최종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일과 관계없이 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Stop&Go기간 종료 신청시 Stop&Go적립금을 일시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카. 피보험자가 Stop&Go기간 중 사망한 경우(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 모두 사망한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Stop&Go적립금을 지급하고 Stop&Go옵션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타. ‘다’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전환특약Ⅱ 무배당을 신청하여 계약이 전환된 경우 및 연금전환특약Ⅲ 무배당을 신청하여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Stop&Go옵션을 신청할 수 없다.

12. 기 타

가.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1)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계약의 납입주기에 따라 매 해당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2) 추가납입보험료

연금개시전에는 (연금개시나이-3)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단, 2종[LTC형]의 경우 (연금개시나이-5)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에는 Stop&Go기간 중 (보증지급나이-3)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이내에서 수시로 납입할 수 있다.

나. 적립이율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 공시이율의 계산에 관한 사항

공시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 (1)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회사는 일반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아래 산출방식과 같이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장래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다만,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와 기존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조정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다.

$$\textcircled{\text{C}} \text{ 공시기준이율(\%)}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times \alpha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1-\alpha)$$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시중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하며,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textcircled{\text{O}} \text{ 객관적 외부지표금리(\%)} = (A1 \times \beta1 + A2 \times \beta2 + A3 \times \beta3 + A4 \times \beta4)$$

A1: 국고채 수익률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회사채 수익률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3: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4: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주) 1. 국고채 수익률은 5년만기 국고채권을 기준으로 한다.

2. 회사채 수익률은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AA-)를 기준으로 한다.

3.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은 통화안정증권(1년)을 기준으로 한다.

4.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은 양도성예금증서(91일)을 기준으로 한다.

○ 국고채 가중치(β1), 회사채 가중치(β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text{국고채 가중치}(\beta_1) = \frac{a}{a+b+c+d}, \text{ 회사채 가중치}(\beta_2) = \frac{b}{a+b+c+d}$$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_3) = \frac{c}{a+b+c+d},$$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_4) = \frac{d}{a+b+c+d}$$

※ **a** : 보험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월평균의 평균)

b : 보험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월평균의 평균)

c : 보험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월평균의 평균)

d : 보험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월평균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나)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운용자산수익률’ 및 ‘투자지출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으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times 100}{(\text{직전13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이익})}$$

○ 투자지출률(%)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times 100}{(\text{직전13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

※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다) 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a)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text{○ 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a) = \frac{A/B+C}{A+C}$$

$$\text{○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 = 1 - \frac{A/B+C}{A+C}$$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하며,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 가중치는 사업연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 직전연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연도말 듀레이션, 수입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 (2) 제(1)호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당월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동종 계정에 있는 동종상품[제(1)호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 이상으로 적용한다.
- (3)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 (4)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적용한다.
- (5)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신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른다.

라. 보험계약대출이율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한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마. 연체이자율

이 보험의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바. 선납보험료

- (1)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월납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한다.
- (2) 제(1)호의 선납보험료는 납입일부터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적립한다. 다만, 선납보험료를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는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 적립하며, 선납보험료를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는 추가납입보험료가 아니므로 제7조(보험료의 정의 및 납입한도)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 (3) 특약보험료의 경우 제(1)호에 따른 월납기본보험료와 동일한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특약의 표준이율로 할인하여 제(1)호의 선납보험료와 함께 납입한다.

사. 고액보험료의 할인

- (1) 적립형의 경우 매월 기본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다음과 같이 할인하여 이를 영수한다(다만, 한 건의 계약으로 여러 구좌 가입시 기본보험료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기본보험료	할인금액
30 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	30만원 초과분의 0.5%
50 만원 이상 100 만원 미만	1,000원 + 50만원 초과분의 1.6%
100 만원 이상 200 만원 미만	9,000원 + 100만원 초과분의 2.0%
200 만원 이상 300 만원 미만	29,000원 + 200만원 초과분의 2.5%

300 만원 이상	Min[54,000원 + 300만원 초과분의 3.0%,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의 2.0%]
-----------	--

- (2) 거치형의 경우 기본보험료가 7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다음과 같이 할인하여 이를 영수한다.

기본보험료	할인금액
7 천만원 이상 1 억원 미만	7천만원 초과분의 0.3%
1 억원 이상 3 억원 미만	9만원 + 1억원 초과분의 0.7%
3 억원 이상	Min[149만원 + 3억원 초과분의 1.3%,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의 0.5%]

- (3)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제(1)호를 적용한다.
-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추가납입보험료는 할인되지 않는다.

아. 조기 연금개시에 관한 사항(맞춤설계형에 한함)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금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다만, 특약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1% 이상인 경우 이후 도래하는 연단위 보험계약 해당일에 계약자는 제4조(피보험자 가입나이)에도 불구하고 조기 연금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금개시나이는 45세(신부부형의 주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 48세)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추가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납입일로부터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자.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매년 인출당시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의 50%범위 내에서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 이내(2,000원 한도)로 한다. 다만, 인출할 수 있는 최소금액은 10만원이며,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한다.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9조(보험료 납입유예제도에 관한 사항)에 의한 납입유예 기간 중 1회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의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에서 「납입 유예기간 중 잔존 납입유예월수 × 약정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3) 제(1)호에 의한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한다.
- (4) 제(1)호에 의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적립형은 1구좌당 300만원과 기본보험료의 7배 중 작은 금액 미만, 거치형은 일시납보험료의 30%미만이 되지 않아야 한다.

차. 보험료 납입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납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다.

- (1) 3년납, 5년납, 7년납으로 변경할 경우
- (2) 이미 지난 납입기간으로 변경할 경우

카. 연금전환특약Ⅱ 무배당에 관한 사항

(1) 대상계약

계약일로부터 5년(단, 거치형은 3년)이상 지난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으로서, 사망보험금 수령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계약

(2) 연금전환특약Ⅱ 무배당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전환전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단, 맞춤설계형 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의 법적 배우자로서 전환전계약의 보험수익자

(3) 운용방법

(가) 회사는 전환전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그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연금으로 전환한다.

(나) 전환신청 당시 전환전계약의 보험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가)목에 따라 전환 신청할 수 있다.

(다) 연금전환특약Ⅱ 무배당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특약 연금개시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한다.

(라) 연금전환특약Ⅱ 무배당은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마) 연금전환특약Ⅱ 무배당의 전환신청에 따라 계약이 전환된 경우 제11조(Stop&Go옵션에 관한 사항)의 Stop&Go옵션을 신청할 수 없다.

타. 연금전환특약Ⅲ 무배당에 관한 사항

(1) 전환신청 및 취소

계약자가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전까지 전환(전환신청의 취소를 포함)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전환시기

전환전계약의 연금개시시점

(3) 전환금액

연금개시시 계약자적립금

(4) 기타운용에 관한 사항

(가) 연금전환특약Ⅲ 무배당은 전환전계약의 계약일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나) 연금전환특약Ⅲ 무배당의 피보험자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로 한다.

(다) 연금전환특약Ⅲ 무배당의 전환신청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한 경우 제11조(Stop&Go옵션에 관한 사항)의 Stop&Go옵션을 신청할 수 없다.

파.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1%를 최저보증 한다.

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한 안내(2종[LTC형]에 한함)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으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드리고,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 녹음함으로써 교부 및 설명한 것으로 본다.

거.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너. 보험안내자료 등의 필수 기재사항 및 청약서의 고객확인사항

회사는 「‘일상생활장해상태’ 및 ‘중증(重症)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방법」을 계약자 등이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안내자료 등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청약서에는 계약체결시 「‘일상생활장해상태’ 및 ‘중증(重症)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방법」에 대한 회사의 설명 및 안내 여부를 계약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확인사항으로 추가하여 운용한다.

더.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러. 1종[맞춤설계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3개월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을 안내한다.

머. 헬스케어 서비스 부가에 관한 사항

- (1) 헬스케어 서비스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신청서(개인[신용]정보수집, 제공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한 피보험자에게 제공한다.
- (2) 헬스케어 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사에 있다.
- (3) 헬스케어 서비스는 대외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